

의안번호	
의 퇴 인	정을호 의원
회 답 일	2024.07.19.
추 계 번호	24C1369
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 ¹⁾ 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등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8조 (진로체험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진로체험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3	안 제21조 (보호자등의 참여)	(제1항)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등의 보호자, 지역사회 인사, 졸업생 등이 학생등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안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 안 제21조(보호자 등의 참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2조제1호 1. “진로교육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(이하 “**학생등**”이라 한다)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·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, 진로심리검사, 진로상담, 진로정보 제공, 진로체험,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진로교육의 대상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을 포함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에 따라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‘학교 밖 청소년’은 ‘초등학교·중학교 등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, 고등학교 등에서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,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’임²⁾

□ 개정안에 따라 ‘학교 밖 청소년’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진로교육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소요 예산을 추정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 2024년 현재 ‘학교 밖 청소년’에 대하여는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에서 진로탐색, 진로체험 등을 돕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자립·취업을 위한 직업훈련·일경험을 제공하는 자립·취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
 - － 참고로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는 전국 2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, 상담·학업·진로·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참고자료 1]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(2024년)

[참고자료 2]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및 성과 현황(2023년)

-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기존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에서 실시되던 진로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나,³⁾ 현시점에서 시행 중인 사업 이외에 추가 또는 확대될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⁴⁾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2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3) 「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안이유

(...)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**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**(이하 생략)

4)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추가된 조항 외에도 ‘진로교육 현황조사’에서의 대상 추가, ‘국가진로교육센터·지역진로교육센터’의 업무범위 확대, ‘진로교육 콘텐츠’ 제공 다양화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, 기존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시되던 사업과의 관계 및 동 사업 외에 신규·추가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예상하기 어려움

[참고자료]

1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(2024.6.기준)

(단위 : 개소)

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22	26	17	9	9	6	3	5	1	32	13	13	16	10	23	15	21	3

2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및 성과 현황 (2023년)

(단위 : 명)

구분	총계 (실인원)	학업복귀				사회진입				자립역량향상			
		계 (실인원)	학교 복귀	검정 고시	대학 진학	계 (실인원)	취· 창업	직업 훈련	자격 취득	계 (실인원)	자기 계발	진로· 학습 체험	수상 경력
	17,693	14,078	1,336	11,382	1,977	4,406	939	997	3,278	3,415	3,015	89	557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